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: 2018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: 김화영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 
제10차 행정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화영 의원 )

가. 제안이유

- 노령인구의 증가,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제한 폐지 권고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장위촉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장 위촉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통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통장 위·해촉 관련 연령상한 제한 폐지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묵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연령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  -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, 통장 위촉 시 “30세 이상 65세 이하” 연령상한 규정을 폐지하여, “30세 이상 주민”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, 통장 위촉 시 연령상한 제한을 폐지하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,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,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,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에서도 통장 위촉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, 이를 반영하여 통장의 연령상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수정안의 요지

#### 가. 수정이유

- 조례 시행일을 확정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5. 심사결과: 수정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호	관 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12. 12.

제안자 : 허홍석 의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 시행일을 확정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수정내용

- 부칙안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안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u></p>	<p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u></p>	<p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</u></p>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”을 “30세 이상의 주민”으로 하고, 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<u>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</u>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구청장은 통장을,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5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하였을 때</u></p> <p>7. ~ 8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0세 이상의 주민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삭제</p> <p>7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1월 일

발의자 : 김화영 의원 외 7명

## 1. 제안이유

노령인구의 증가,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제한 폐지 권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장 위촉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장 위촉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통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통장 위·해촉 관련 연령상한 제한 폐지(안 제5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8. 10. 30 ~ 11. 4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”을 “30세 이상의 주민”으로 하고, 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<u>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</u>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구청장은 통장을,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5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하였을 때</u></p> <p>7. ~ 8. (생 략)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0세 이상의 주민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삭제</p> <p>7. ~ 8. (현행과 같음)</p>